



강 남 구



수신 김정갑님 귀하(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70, 304(당산동5가 이화빌딩))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옥상) 디자인 변경허가 처리 통보(No587047, (주)케이알애드)

1. 귀 하(사)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 하(사)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디자인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 허가증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1)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업 소 명
김 정 갑	*****	영등포구 선유동2로70, 304 (당산동5가, 이화빌딩)	(주)케이알애드

2) 광고물 변경 내역

종 류	허가번호	설치장소	표 시 내 용		규격(M)	수량	표 시 기 간
			변경 전	변경 후			
옥 상 (타 사)	1999*****-09 -1-94597	테헤란로 205 (역삼동 678-35)	(정면) iPHONE6로 찍다 (이미지:해바라기)	(정면) iPHONE6로 찍다 (이미지:벚꽃)	17.0×11.0	1	2014. 10. 16 ~ 2017. 10. 15

나. 허가의 조건 : 이 옥외 광고물은 타사광고로써 자정에 소등하여야합니다.(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조제3항제3호) 아울러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 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합니다. 허가 내용을 임의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조건은 허가증 이면과 같습니다.

다.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준수사항

- 1. 광고물은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설치하여야 합니다.(사전설치는 불법임)
 - 2. **광고물 설치시 표시허가(신고)필증과 동일하게(규격,광고내용,위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3. 이를 위반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취소,강제 철거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아울러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스카이라인이 보도 및 차도 점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로점용 사전허가를 건설관리과에신청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 옥외광고물법제3조제1항에 의거 허가받은 광고물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에 의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후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붙 임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필)증 및 허가조건서1부. 끝.

강 남 구 청 장

주무관 **정상섭** 광고물관리팀장 **변기욱** 도시계획과장 **최주학** 도시환경국장 **전결 06/17**
배경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469 () 접수 ()
우 135-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124 /전송 02-3423-8843 / 부분공개